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507505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5. 7. 9.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2015. 10. 15. (피고 5, 6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5. 11.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660,760원 및 그 중 37,320,91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 D, E, F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7,32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피고 B, C, D은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E, F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B, C,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고, 피고 E, F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2009. 8. 경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A이 피고 D이 운영하는 'H'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직원으로 기재한 'H 대표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 E은 피고 B, C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대출신청자로 하여 체결할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F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F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 B, C은 피고 A과 함께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피고 F을 만나 피고 F 소유의 서울

강북구 L건물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은 2009. 8. 12.경 피고 A을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광명사거리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 A은 그곳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재직증명서 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 B, C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 및 대출은행으로서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받는데 이어 2009. 8. 13.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09. 8. 14. 피보증인 피고 A, 보증원금 36,000,000원, 보증기한 2011. 8. 16.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해주었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피보증인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그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위 상환금 이외에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도 위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바.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F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 F은 위 돈 중에서 400만 원을, 피고 E은 50만 원을 취득하였고, 그 나머지 돈은 피고 B, C이 자신들과 나머지 피고들에게 분배하였다.

사. 피고 A이 2011. 2. 10. 신용유의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11. 위 은행에게 보증으로 인한 원리금 37,320,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위약금이 48,820원, 채권보전비용이

291,0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1. 10. 1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자. 피고들은 위 가. 나. 다.항의 행위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018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피보증인으로서, 위 대위변제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37,660,760원(=37,320,910원+48,820원+291,0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7,320,910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1. 10. 12.부터 2012. 11. 30.까지는 원고가 정한 위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최종적으로 소장부분이 송달된 2015. 4. 29.까지는 위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써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대위변제금 37,320,91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1. 10. 12.부터 위 최종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피고 B, C, D은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 F은 2015. 9. 30.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피고들에 대한 변론종결일이 2015. 10. 1.이후이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에 따라 위 인정비율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A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신청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무렵에 제출된 다수의 다른 대출신청 관련 재직증명원에도 발급명의자가 H 대표 I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단지 유선통화로만 재직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 은행 측이 사실확인에 부주의한 점, 위 피고들은 피고

A이 문제 없이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 B, C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피고들만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사후에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구상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책임액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즉, 행위를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그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나누어 가졌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들로 하여금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피고 E, M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E, M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수